

정정 신고 (보고)

2024년 12월 5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4월 17일

3. 정정사유

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(모든 종류 S수익증권 정의 변경, 2024.08.01 시행)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~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 ~ 2 (생략) 3. 종류S-R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</u>	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 ~ 2 (현행과 같음) 3. 종류S-R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(다만,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적립금은 제외한다)</u>
부 칙	(신 설)	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